

제 2 세션

재난과 재난약자 보호

2 장애인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

두 오 균 박 사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¹⁾

두 오 군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사회적으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요인 증가로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매일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해 부터 잇따르고 있는 각종 산업 제해와 산업안전사고가 사고지역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민들까지 불안케 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과,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생활안전 수요증대가 있고,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사고요인 증가 및 사고의 대형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 도시의 고밀도, 초고층화, 지하 공간 증가, 전기,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 밀집으로 사고 발생 시 복합재해로 이어지고 있고 발전 피해규모도 대형화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신종사고 발생으로 발전되고 있고, 기술 발달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 심리가 증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각종 통계들이 나란히(?)줄서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한 통계가 우리들의 가슴을 멍하게 한다.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17-07-12) 올 상반기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서 6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사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57.1%)은 주택화재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고, 올 상반기에는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562건)에 비해 47건(8.4%)이 늘어간 609건의 화재가 발생됐어, 인명피해는 사망 3명, 부상 18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2명보다 11명(34.4%)이 감소했다. 재산피해는 17억5400만 원으로 6억57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주택화재는 152건(24.8%)이 발생해 지난해 동기대비 7.3%(12건)가 감소했으나, 사망자 3명을 포함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전체 사상자의 57.1%를 차지했다는데 작금의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생활안전의 이슈를 제기하고자 한다. 대전소방본부에서도 분석하였듯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화재발견이 늦어 연기 및 화염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분석됐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앞에 화재가 발생하면 생활안전의 매뉴얼의 부제로 안전 탈출구의 확보와 안전 피난통로의 미 확보등 또는 훈련의 부제로 인하여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재난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사건사고의 예를 살펴보면, 전기장판의 과열 화재로 시각 지체 중복장애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생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16년 2.22), 성탄절 이브 날에는 어느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 한잔하던 중증장애인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2014년 12월 25일), 대구의 어느 아파트에서 가스폭발로 화재로(2013년 12월 29일) 50대 장애인 사망사건이 있

1) 이논문은 두오군(2017, '한국의 장애인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이다.

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위험이 도처에 흩어져서 인간의 생명, 건강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이들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나 기관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 생활안전 위기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체제나 법, 제도 또는 복잡하게 얽혀 체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식품, 의약품, 시설, 교통, 학교, 직업, 취약계층 영역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민생활 안전 관리는 성격상 사후 대응중심의 관리체계이기 때문이다. 국민생활 안전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행정, 법, 그리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국민생활안전 관리 분야의 행정체계 및 법 체계가 분산되어 있다.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법령으로 이루어진 분산형 안전관리이므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중복규제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국민생활안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분류기준이나 유형, 종류, 영역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국민생활안전 위기에 대한 정부대책이 국민, 학계, 시민사회, 정부기관 스스로도 막연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영역으로 인식하게 된다(이재은, 2012).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은 국민들의 평안과 바람직한 생활환경의 성취를 통한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과 사회활동이 모든 사회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외계층을 취약 계층이라고 한다. 사실상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활동에서 경제에서 벗어난 계층이 집단으로 몰려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소외된 계층이 곧 취약계층으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규정은 여러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6) 제 3조 9의 3에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고, 재난 소비자 보호법이나 노인 복지법, 아동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등에 의하면 취약계층을 노인, 아동, 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소비자 기본법에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동법 제7장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자는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 물품 등을 판매, 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에서 명시한 사업자의 책무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으로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 감면 대상으로서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 독립유공자, 공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법률인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경제적 취약자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또는 가족 등이며, 신체적취약자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제시한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우 및 지원 법률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유현정, 2008).

장애인은 국민안전 위기 영역 분류하면 국민생활 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 범위에 따라 협소범위와 중광범위로 나뉘고, 국민생활안전 책임 주체에 따라 개인과 사회를 나뉘어서 장애인은 취약계층의 안전 위기로 협소범위와 개인에 속하는 유형 I 에 속한다. 취약계층 안전 위기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족하며 안전사고 노출빈도가 높고 안전사고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이재은, 2012).

이제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조화를 통해 복지, 행복, 안녕을 추구하고 생활안전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일이라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은 장애인의 수가 많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안전에 관한 일반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생활안전의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별로 인구통계특성,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인 안전교육, 안전정보, 안전의식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생활안전을 구축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고, 장애인 상황에 맞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애인 유형별로 연구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가능하면 많은 변인들을 투입하여 장애인별로 차이점을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인구통계 특성은 나이, 학력, 수입, 주택상황을 투입하였다. 나이는 나이에 따른 발달과업이나 성숙의 정도 및 수용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으로 투입했으며, 학력은 사람에게 교육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여겼으며, 수입과 주택은 경제와 주택환경에 따라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도에서 투입하게 될 것이다.

개인별 특성에서 차별의 경험은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생활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투입했으며, 장애인의 발생 시기와 급수에 따른 생활안전과의 관계는 장애인은 특성을 분류하는데 유익한 변인으로 판단하여 투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인 안전의식, 안전정보 및 안전교육이 생활안전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따른 장애인에게 맞는 대안을 찾아 정책적 반영의 기회가 되기는 바라는 의도에서 이 연구를 추진하는 목적인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연구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어 생활안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에 관한 것을 위기관리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일조를 담당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이론적 범위

위기관리 관점에서 생활안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장애인은 취약계층의 분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생활수급자 및 농어촌 주민으로 나누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장애인의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가 생활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의 범위

인구통계 특성은 연령, 학력, 수입 및 주택유형으로 정하고, 개인 특성은 차별경험, 장애발생 시기 및 장애 등급으로 정했으며, 안전 문화는 안전교육, 안전정보, 안전의식으로 정했다. 이러한 3개의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인인 생활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알아보는 것이다. 종속변인인 생활안전의 하위 변인으로 가정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등으로 정했다. 이에 결과로 나타난 것을 법적,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3) 지역 범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대도시를 한정하고, 시간적으로 2017년 3월부터 5월 동안에 제1차 장애인 남, 여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생활현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4년도 장애인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4) 연구 대상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가지 장애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연구의 대상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로 한정하였다. 나머지 12가지 장애는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연구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으로는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장애인으로 범위를 정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 1 장은 문제 배경과 목적 및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 2 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안전문화, 생활안전 및 선행연구 검토로 구성되었다. 제 3 장은 연구 모형과 가설 및 연구방법으로 설정하고, 제 4 장에서는 연구결과로 가설검증 및 해석을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 5 장의 요약 및 결론과 제언을 다루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 조사,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survey)를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서 SPSS 22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안전관련 실태조사를 위해서 장애인별로 기술 분석과 함께 T 검증과 F를 실시하여 장애인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인구통계 특성, 장애인의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가 생활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체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취약계층

1. 취약성의 개념

취약성에 대한 개념 모형은 개인차원과 다양한 수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차원의 개념모형에는 개인결정요인 모형과 개인 사회자원 모형, 개인 보건형태 모형,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이 있다(유현정, 2008).

개인결정모형은 취약계층을 이미 숙명적으로 타고난 집단으로 명명하고 나이, 종족, 성, 교육 및 생활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는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고통 또는 가족끼리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으로 매우 약할 수 있으며, 남성은 직장으로 인한 높은 짧은 스트레스로 평균 수명이 짧고 사망률이 높아서 취약계층에 속할 수 있다.

개인 사회자원 모형은 나이, 민족, 성별 등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상태에 따라 취약성을 가진다는 의미로 특정한 사회나 개인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위치, 사회적 자본 및 인적자원이 취약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자원 모형의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정보취약계층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보건형태 모형은 건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 경제적 위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개인이 경제수준이 낮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없으며, 보건의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모델이다.

2. 취약계층의 정의 및 특성

취약 계층의 정의 및 특성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에서 인식될 수 있다(김세훈 외, 2005: 6). 사회적 배제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이라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빈곤과 같은 사회적 현상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금전적인 문제에서 다차원적인 불리함으로 확대하고, 개인에 치중하기 보다는 가족 및 지역사회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참여, 권한, 사회통합 등과 같은 관계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Room, 1995: 233-242). 김세훈 외(2005)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 현상이 고용,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예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숙련 노동자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 대량 실업 사태에 빠진 노동자, 사양 산업으로 인한 특정 산업 종사자의 실업상태 등을 들고 있다(김세훈 외, 2005: 6-7). 고용 및 복지정책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저 기술여성 인력의 취약 계층으로의 분류는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세훈 외, 2005: 7).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들 수 있다. 김윤희 외(2012)는 사회적 약자를 '기본적인 사항들, 즉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헌법 제 34조에 명시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지칭하고 있다.

3.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따른 의미

1) 법·제도적 접근

헌법에는 장애차별 금지의 근거 규정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4조). 이에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는 생활안전과 재난으로 부터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어있고, 정부는 장애인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국민으로서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법률들을 살펴보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을 생활안전과 재난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근거조항은 부재하였고, 타 법에서도 장애인 생활안전이 아닌 안전대책수준의 단순 규정, 규칙만이 있을 뿐이다.

2) 사회적 접근

이석호(2007)는 '보험사의 공익성과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논의에서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및 공익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으로 노력 및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취약계층으로 재래시장상인, 고위험 직종종사자,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들고 있음 그중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많은 신문기사들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을 살펴보면 주제에 따라 다소 접근에 차이는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접근의 차이는 대상을 규정하는데 적절한 차이를 주고 있으나 대상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일정 집단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3) 학문적 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인숙(2004)은 취약계층을 경제적 취약계층과 연령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정은과 이재인(2006)은 취약계층을 장애인 가족 빈곤가족, 한 부모 가족으로 분류했다. 또한 이경용 외 7인(2007)의 '산재취약계층 실태분석'에서는 산재취약계층으로 비정규직 종사자를 들고 있으며 특히, 용역근로, 파견근로, 호출근로 등이 그중에서도 더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4. 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

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은 생활안전이라는 광범위한 조건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립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로 활동이나 이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 판정 기준에 근거하면, 기능상실, 질환등 원인과 유형에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스스로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다. 생활안전에 취약계층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대한 담보가 사회 환경적 특성과 개인의 역량이 한계가 있어 생활안전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

는다. 따라서 생활안전에 대하여 특별한 욕구가 있는 대상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 2 절 장애인 생활 현황

1. 장애의 분류와 원인

1) 장애의 분류

장애의 범위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총 15종류의 장애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5개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가지로 분류와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유형 분류는 1997년에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이후의 단계적인 장애법주 확대에 의한 것으로 1단계 장애법주 확대가 1999년에 이루어져 장애법주가 5개에서 10개의 유형으로 확대되었고, 2단계 장애법주 확대는 2003년에 이루어져 10개의 유형이 15개의 유형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제 3 절 안전문화

본 연구에서 안전문화는 안전교육, 안전정보 및 안전의식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1. 안전교육 및 안전정보

1) 안전의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누구나 음식, 물, 공기, 땅,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처에 있다.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Douglas and Wildavsky, 1982 : 김영치, 1998 옮김). 위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안전은 범위에 따라 다르고,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상반된 개념인 위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본 독일 경제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 1997)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에서 위험을 근대화로 가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정의하

며, 위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는 위험이 갖는 특징으로 위험의 보편성, 예측의 난해성, 회피해야할 대상, 무한성, 위험의 광범위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특성을 통해 현대사회를 객관적으로 지구전체를 위험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위험이 사회적 부메랑 효과를 보이면서 확산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안전이란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환경으로부터 건강한 신체에 대해 완벽한 보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안전은 인간존중의 사상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항상 같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우리 주위의 환경을 재정비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인 것이다(박성은, 2001).

2) 안전 이론 및 체계

일반적으로 안전이란 사고 또는 상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전적(새 국어대사전, 1995)으로는 편안하고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광석(1987)은 몸이 건강하고 생명의 위해가 없는 신체적 안전만을 '안전'이라고 보았고, 주낙서(1987)는 신체적으로 편안하고 생명에 위협요소가 없으며 정신적 손실이 최소화한 상태라고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안전'이라고 하였다.

(1) 안전 이론

오늘날 안전에 관한 제 이론들을 Heinrich 산업 안전의 원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Heinrich와 같이 도미노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로는 Frank Birds, Edward Ada, s, D, A Weaver. Mixhael Zabetakis 등이 있으며 이중 Heinrich와 Frank Birds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인리히(Heinrich)이론은 사고발생의 연쇄성을 강조한 도미노 이론으로서 재해의 발생은 언제나 사고요인의 연쇄반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대부분의 사고 책임은 불안정한 인간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미노 이론이라고 불리는 재해의 인과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미노 게임에서 하나의 공패를 쓰러뜨리면 연속적으로 공패가 무너지는 현상을 비교하면서 재해과정이 연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즉 사회적 환경→개인적 결함→불안전 행동 및 불안정한 상태→사고→상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예방의 중심문제로서의 제3의 요인인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의 중추적 요인의 배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미노 이론은 5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라도 사고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사고방지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연쇄이론의 핵심과제는 불안정한 상태를 통제하는 것이며 이 통제를 위해 과학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Heinrich는 사고와 재해의 관련을 명백하기 위해 「1: 29: 300 법칙」으로 재해 구성 비율을 설명하면서 1회의 중상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은 같은 원인으로 29회의 경상재해를 일으키고, 또 같은 성질의 무상해 사고를 300회 동반한다고 하는 것이다. 전 사고 330건 중에서 중상이 나올 확률은 1, 경상은 29, 무재해 사고는 300건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반드시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큰 재해는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문

제가 발생한다.

2. 안전사고

1) 안전사고의 개념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탈이 없거나 위험하지 않거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영어사전은 'free from harm, injury or risk no longer threatened by danger or injury'로 기술되어 있어 그 의미가 국어사전에 나온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소방 방재청, 2007).

김혜원(2001)은 '안전이란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적 피해 혹은 사고부터 오는 재산적 피해를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안전의 정의에 대해 국제보건기구(WHO, 1981)는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위험과 육체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해로움을 초래하는 조건들이 조정되는 상태라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안전이란 위험으로부터 오는 사망, 상해 및 질환 또는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손해를 방지 또는 극소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상태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권봉안 등, 1987).

따라서 안전이란 인간의 신체에 재해를 받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개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함께 살아가야하는 점에서 운명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박성은, 2001).

이 연구에서 안전사고의 의미는 박용익 등(2008)이 사용한 의미로 정의되며, 즉 안전사고(safety accident)란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정한 행동 또는 조건이 선행되어 일을 저해시키거나 능력을 저하시키며 직·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event)을 뜻한다.

2) 안전의 접근방법

인간은 누구나 편안한 삶의 영위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으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 또한 강하다(Maslow, 1970). 안전이란 위험의 반대개념으로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안전 활동 추진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인간애와 인간 존중이 바탕이다(박필수, 2004). 그러나 인류의 문명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생활의 편리함과 함께 각종 재해 즉, 교통사고, 산업장 안전사고, 가정안전사고 그리고 여가활동 중의 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율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재산의 손실과 인명손상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Bjaras, 1993). 사고로 인한 사망(연도별)의 연령대 비율(한국)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자살, 타살 제외)는 2001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65세 이상의 노인 계층에서는 오히려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용익 등, 2008).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을 바꾸거나 혹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교육을 통해 변화시킨다면 안전에 대한 개념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위험을 예측하고 올바른 대처 능력을 갖추 수 있는 태도, 능력 및 실천력을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위험인식을 높이고, 사고원인에 대한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이다(이재연과 이명자, 2002).

3. 안전 교육의 의미 및 목표

안전교육이란 교육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몸에 익숙하게 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즉, 개인과 집단의 안전성과 건강을 최고도로 발달시키는 교육이다(김혜원, 2002). 또한 안전교육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논의를 통한 설득적인 대화, 강화자극을 통한 강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 의식을 생활함은 물론 안전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내면화시키고 습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김연순, 1983).

결국 안전교육이란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적도록 행동 및 환경을 만든 것을 교육하는 것과 아무리 본인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로부터 자기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행동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잠재하는 위험요인 또는 불안정한 요소를 미리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확실한 안전교육은 잘못된 정보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가져오는 성과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안전교육의 목표는 개인이 조심성을 익혀서 위험에 대처 가능한 선견지명을 갖고, 안전하게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도록 자신의 태도를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 네 가지와 같다(김혜금 외 4명, 2009).

첫째, 인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킨다. 둘째, 안전에 관련한 지식과 기능을 함양시킨다.

셋째,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생활화하도록 육성한다. 넷째, 안전 행동의 통찰력을 배양시킨다.

제 2 절 안전의식

1. 안전의식의 개념

의식은 깨어 있을 때의 심리적 작용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지각하고 그리워하는 기능과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자신의 행동의 근거가 된다. 우리사회에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표현은 안전에 대해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안전의식이란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켜내고, 뜻하지 않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는 안전의 인지도를 의미하고(김혜원, 2002), 이러한 안전의식은 모든 사고와 위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거나 예방에 필요한 태도와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최인범, 1998).

안전의식을 정의하면, 안전의식이란 근로자가 잠재적으로 작업시스템에서 생기는 인간의 실수나 잘못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식부족이나 지각의 잘못, 주의의 방심 등의 소질적 특성 레벨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은 또 안전에 대한 의식 상태에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작업상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의 지식을 가지고(인지적 성분),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가치적 정서적 성분), 안전측면의 행동을 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안전의식은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

전에 대한 인식의 흐름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숙지하고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을 없애거나 예방에 필요한 태도와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다.

제 4 절 생활 안전

1. 생활안전의 개념

우리는 안전의 개념을 설명하기 이전에 위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안전의 개념도 위험의 개념에서부터 접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며, 과거에 비해 위험의 강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 속의 독소, 핵의 위험, 방사능,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비가시적이고 사람들이 감지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대화가 만들어낸 위험요소 일 것이다(Beck, 1992 : Giddens, 1991 : Luhmann, 1993).

또한 생활안전이란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신장시키는 것”(두경자·운용희, 2006: 76 신현정·신동주, 2007: 277; 배대식, 2009: 2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 생활안전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이나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신현정·신동주, 2007: 277; 배대식, 2009: 21; 박혜연, 2009: 13)으로 정의하고 있다. 삶의 발전은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를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 향상과 욕구 향상은 결국 안전에 대한 욕망을 더 높이고 있으며, 이제 안전은 당연한 일상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일상생활 주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각 종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발생하는 경미한 손상 및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드는 것이 생활안전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생활 안전의 분야

WHO의 사고분류에 의하면 사고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가정사고, 교통사고, 공공사고, 직장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인 각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발생한 사고는 적절한 응급처치가 행해져야 한다.

안전사고는 연령, 성별, 지역에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가장 생산력이 높고 국가의 미래를 담당할 젊은 연령인 중·고등학생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구를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명선, 2001). 사고로 인한 사망률인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1,127건), 고등학교(857건), 초등학교(732건) 순으로 중학교 학생이 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연령으로 나타났다(서울학교안전공제회, 1999)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는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분야는 학교안전, 가정안전, 교통안전, 화재 안전, 수상안전 등이다(한국산업 안전공단, 1999; 교육인적자원부, 1997).

제 5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취약계층의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안전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재난 취약자 관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통상 취약계층이란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위험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해서 개인이나 사회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특성으로 의미한다. 취약계층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지만 종합적으로 신체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정보적 취약계층으로 나뉠 때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 된다.

이전의 선행연구에서 최경식(2013)은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던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영역이 확대해 가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에 비해 전체적인 시스템은 미비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난 취약자들에게는 더욱 더 시스템에 대한 부재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는 재난에 대한 구분에 따라 재난 취약자를 관리하고 재난 취약자 특성에 따라 재난 취약자의 대피체계 보안 정보전달망 구축, 장비보급, 전달체계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정비를 하는 것이며 재난 취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 취약자 매뉴얼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 취약자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심기오 외(2010)는 재난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방재대책방안을 총체적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그는 노인들의 경우 대피우선순위를 세분화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 노인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담당자 지정을 주장하였다.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재난의 취약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RFID의 설치 및 재난 상황전파를 위한 다양한 수단 강구 충분한 대피장비의 확보를 주장하였다.

이에 더불어 재난안전에 필요한 매뉴얼이나 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장한 선행연구로 권호순 외(2013)는 지체장애인들의 재난관리 욕구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책을 매뉴얼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지체장애, 뇌성장애 등 장애 분위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검토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구조대원들의 대응책을 도출하였다.

김윤희(2012)는 재난 취약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의 연구에 집중하였다. 이들은 재난안전 콘텐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하여 재난 취약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달 체계별로 분류한 콘텐츠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편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이재은(2004)은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과정을 분석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재난 관리 전달기관을 조직하고, 운영방안을 재난 유형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는 재난 관리 시스템이 재난 유형에 따라 민방위, 인위재난, 자연재난, 소방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기능의 수행이나 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기획, 지원, 완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평가, 교육, 훈련, 홍보, 소방 및 긴급구조 등과 같은 조직을 갖추는 것이 총체적 재난관리 기능 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2. 안전문화

안전문화의 하위변인들의 안전교육, 안전의식 및 안전정보간의 관계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간의 관계성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안전교육, 안전 의식 및 안전 정보를 다루지만, 이와 관련된 논문은 미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안전교육, 안전의식 및 안전정보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전 교육

안전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볼 때 안전 교육은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유선희(2003)는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시킨 후 교통안전지식을 평가 한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자전거, 자동차 그리고 교통안전지식 점수에서 통제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유선미(2004)는 만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10회의 안전교육활동을 한 결과 실험집단이 유아의 전체 교통안전지식 증진과 교통안전사고 증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박희준(2002)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한 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교통안전 문제 해결 사고점수와 교통안전지식검사 점수가 높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고정완(2016)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지식과 생활실천능력을 길러 학생들의 안전생활 문화를 높이는 것은 효과적인 안전교육의 전략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명애(2002)은 학교 안전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의 안전생활 습관형성은 물론 학교 안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발견하고, 즉, 학교에 존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안전교육프로그램 중재효과 연구에서(정명애, 2004) 안전사고에 방을 위해서는 안전생활의 실천이 필요한 요소이며, 가정과 연계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수정(1997)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행동과 사고발생에 관한 조사에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 교육, 놀이사고, 화상사고 순으로 실시되었는데 부모가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아동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동에 능해서 사고를 경험하는 비율이 적었다. 교육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은 지시나 명령으로 얻어진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유지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동기의 안전교육은 생활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생애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되어야 한다(이종락, 2001)

2) 안전 의식

안전 교육처럼 안전의식의 선행연구는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면에서 적절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안전의식을 다룬 선행연구(이경재, 2014; 심철우, 2013)에서는 안전의 정의를 안전에 대한 인지도라 규명하였지만 손정희(2017)에서는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예방하고, 벗어나고, 알리는 행동적 측면에서의 안전의식을 다루었다는 점이 달랐다.

현대사회에서 문명의 이기가 발달할수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과 기능, 안전의식이 필수로 요구된다.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안전문화는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향상된 안전의식이 잠재적인 사고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안전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매우 열악하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혜숙(2001)은 안전사고의 원인을 보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안전의식 결여가 가장 높게 나왔고 시설 불량이나 열악한 주변 환경시설도 높게 나왔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본인의 안전의식 함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안전한 환경조성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1999년 공보처의 국민의 안전의식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93.4%의 조사대상자가 안전의식 수준이 보통 이하로 생각하고 있었고 무의식적인 습관, 바쁘고 급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였다(김주영, 2001). 불안정한 조건과 행위를 통제하려면 사전에 안전 지식을 줌으로써 불안정한 조건을 배제하고 불안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찍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김영해, 2001).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이원태(2009)는 생활안전의식과 사고유발요인의 관련 연구에서 가정 안전의식이 낮을수록 안전사고 경험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안전사고의 원인은 전체 대상자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62.0%이었고, 안전지식 부족 21.1%, 피로의 누적 3.0%, 안전태도 부족 2.9% 그리고 안전장치의 부족이 2.5%이었다고 보고하여 안전사고의 원인과 관련한 안전의식과 안전교육에 대한 지각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3) 안전 정보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 의식을 함양할 때 적절한 안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필수적이다. 한국생활안전연합(2006)은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안전생활 실천행위에 대한 부모들의 실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69.02로 나타난 부모들은 자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와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박화숙 등(2000)은 안전생활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안전생활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였다고 하였으며, 응급처치법에 대한 지식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에서 불과 30% 정도의 정답율을 보이고, 아동이 인지한 학교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학교 시설, 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아동들의 관심도가 낮았다. 교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의 중요성에 대해 아동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희선(2006)은 안전지식, 위험지각, 안전생활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안전지식과 위험지각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안전지식이 많을수록 영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의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가정환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정 내에 안전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안전지식과 안전실천 정도를 향상시켜 줄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가정환경을 이루 수 있도록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생활안전 분야

생활 안전 분야를 나누는 것은 전문가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살펴보면 학교안전,

가장 안전, 전기 안전, 교통 안전, 응급처치, 소방 안전, 재난안전 등으로 나누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안전과 응급처치는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생활안전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학교 안전을 다루었기에 학교 안전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전에 관하여 유추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희택(2017)은 일상생활에서의 포괄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상황에만 국한된 접근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기존의 안전사고의 대책방안이 보건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면 이제는 안전의식과 안전지각의 향상을 바탕으로 안전생활 실천행위를 일상 생활화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야 될 것이다. 그러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전지식과 안전교육지각 그리고 안전생활실천행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유아에서 어린이에 치중되어 있을 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송명진(2015)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의 중요도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본인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안전에 가장 위험을 느끼는 장소에 관해서는 도로, 노상, 역, 정류소, 상가, 업소, 유흥시설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위험을 느끼는 시간대는 밤 8시부터 새벽 4시에 나타났다. 안전도에 관한 결과는 화재,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 건축물과 시설물, 가스폭발, 산업재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안감을 나타냈다.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송병길(2015)은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안전의식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임이 나타났으며 제도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무관심으로 나타났고 우리사회에 대한 안전을 위한 법과 규정을 잘 갖추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련법과 규정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시민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재난발생시 우리사회의 대처능력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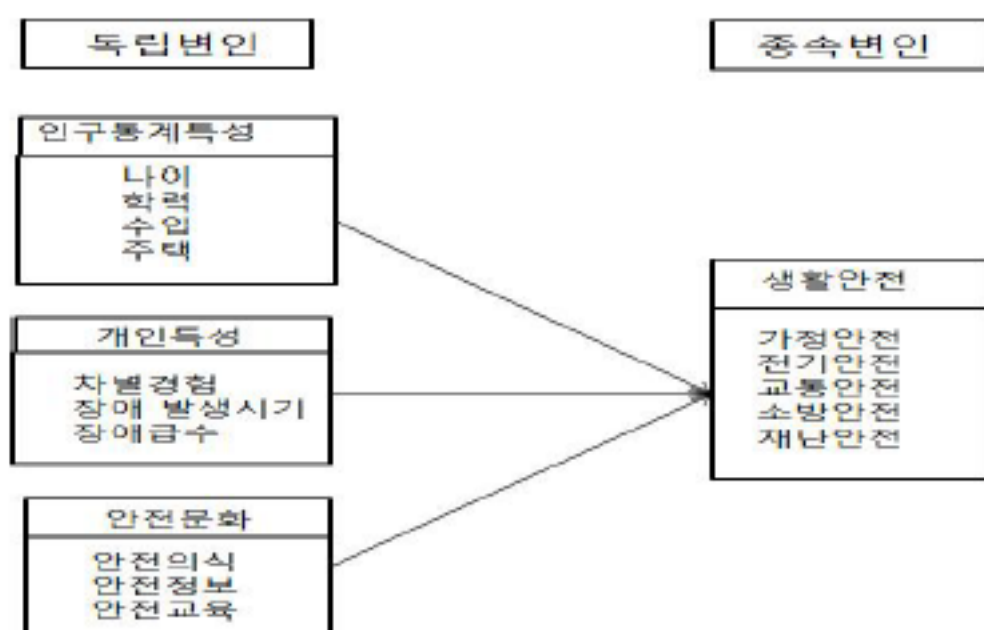
제 1 절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1. 연구 모형

연구의 모형은 인구통계특성,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첫째는 장애인들의 인구통계특성에 따라 생활안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는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생활안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는 장애인들의 안전의식, 안전교육 및 안전정보가 생활안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2. 연구 문제

인구통계특성, 개인 특성 및 안전문화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6)제 3조 9의 3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취약계층의 한 부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장애인은 총 15 유형으로 분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체장애인, 시각 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생활안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3가지를 설정한 이유는 첫째, 인구통계특성의 나이, 학력, 수입 및 주택 변인은 선행연구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별 인구통계 특성이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특성의 차별경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급수의 변인을 통해 생활안전에 미치는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차별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발생시기와 장애급수는 장애인의 개인상황에 대한 분류하는 기준이므로 이 기준에 의거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의 변인으로 삼았다.

안전문화는 생활안전과 직접적으로 미치는 요인으로 이 연구의 핵심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지체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 및 안전문화는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1) 지체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 지체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 지체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과 안전문화는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시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 및 안전문화는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1) 시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 시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 시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과 안전문화는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청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 및 안전문화는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1) 청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 청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과 개인 특성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 청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과 안전문화는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역에서 100여명씩을 대상으로 삼았다.

2. 자료 수집

<표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내용

구 분	내 용
모집 단	대전, 대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을 대상
전체 배부된 수	1500부
회수된 설문지 수	1193부
실제분석 대상	771부
표본 추출방법	집락표집, 무작위표집
조사 도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 방법	직접, 배부, 우편(설문조사에 대한 안내문과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실시)등
조사 기간	2017년 3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일까지 약 5주간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표준화된 설문지는, 국민안전처, 유현정(2010), 송병길(2015), 국

민안전의식지수 측정용 설문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이용하였고 측정은 likert식 5점 등간척도로 구성하였다.

4. 통계분석

우선, 설문지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22.0을 이용하였고, 인구통계변수 및 일반적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설문문항의 구성타당도 및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안전 실태 조사를 위해 기술분석 및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의 생활안전과의 관계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의 생활안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을 분류하여 각 장애인들의 배경변인, 장애인의 개인 특성 및 안전문화를 독립변수로 해서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비연속적인 변인인 나이, 학력, 수입, 주택, 발생시기, 장애급수 변인들은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없어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미변수로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모형은 3가지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투입방식은 전체 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방식(enter)이었다.

<표 4-10> 모형 유형과 투입변수

모형 유형	투입변수
모형 1	배경 변인(나이, 학력, 수입, 주택)
모형 2	배경 변인 + 개인 특성(차별경험, 발생시기, 급수)
모형 3	배경 변인 + 개인 특성 + 안전문화(안전의식, 안전정보, 안전교육)

1. 지체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와 생활안전간의 결과

지체 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 영역이 생활안전의 하위변인인 가정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및 생활안전전체에 대해 얼마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체장애인의 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인구통계 특성의 나이는 재난안전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영역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지체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거의 지지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모형의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변인에 있어서 T값이 유의미한 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17> 지체 장애인과 생활안전과의 관계 요약

변수			가정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인구 통계 특성	나이	40대 미만					4.66***	
		50대 미만					2.73*	
개인 특성	차별	차별	-2.4*			-2.58*		
		출생시					2.28*	
	시기	10대 미만					2.185*	
		30대 이상					4.39***	2.10*
안전 문화	급수	1급					-2.00*	
		2급						
		안전의식				3.47*	2.06*	2.41*
		안전정보	2.87**				2.94**	2.49*
		안전교육	2.23*	2.88**	4.26***	4.9***	4.59***	5.54***

개인 특성에서 차별의 경험이 가정 안전과 소방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난안전에서는 장애 발생시기와 장애 급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안전은 장애 발생시기 30대 이상에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에 개인특성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생활안전의 시기 등이 일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문화에 있어서 생활 안전 하위변인과 전체에서 안전교육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체 장애인에게 생활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재난 안전과 생활안전 전체는 안전의식, 안전정보 및 안전교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재난안전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의 모든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안전문화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하고 있었다.

2. 시각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와 생활안전간의 결과

변인별로 살펴보면 인구통계특성에서 나이는 재난 안전에 영향을 주고, 학력은 가정안전과 소방안전에 영향을 주며, 수입은 소방안전과 재난안전에 영향을 주고, 주택은 소방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인구특성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생활안전의 하위 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생활전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

개인특성은 차별경험(교통 안전)과 장애 급수(재난안전)에서 영향을 주며, 안전문화에서는 안전의식은 교통과 생활안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안전정보는 전기 안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개인특성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일부 하위 변인에서 유의미하지만 생활안전 전체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지지하지 않았다.

안전 문화에서 안전교육은 가정 안전과 전기안전 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기안전은 아무 변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안전문화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의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에서 F값과 T값이 유의미한 변인만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냈다.

<표 4-24> 시각장애인과 생활안전과의 관계 요약

변수		가정안전	전기안전	교통 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인구 통계 특성	나이					2.04*	
	40대 미만						
	50대 미만						
	초등졸	-2.59*			-2.12*		
	학력						
	중등졸	-2.34*					
	고등졸						
수입	50만 미만				-1.99*	-3.00**	
	100만미 만				-2.70*		
	200만미 만				-2.54*		
	주택				2.43*		
개인 특성	차별			2.48**			
	차별						
	1급					-2.79**	
안전 문화	급수						
	2급						
안전 문화	안전 의식			1.99*			2.37*
	안전 정보	3.89***		2.36*	2.82**	2.55*	4.27***
	안전 교육			3.52**	2.43*	2.57*	3.96***

3. 청각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와 생활안전간의 결과

<표 4-30> 청각장애인의 생활안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78		2433***	378		1502***	257		9.22***
인구 통계 특성	나이	40대 미만	-.09	-.07	-.88	-.07	-.06	-.64	-.06	-.06	-.61
		50대 미만	.17	.11	1.47	.19	.13	1.61	.11	.07	1.06
	학력	초등졸	-.22	-.13	-.15	-.20	-.11	-.137	-.16	-.09	-.123
		중등졸	-.33	-.2	-2.3*	-.3	-.19	-2.22*	-.25	-.16	-2.01*
		고등졸	-.34	-.26	-3.16**	-.31	-.24	-2.88**	-.31	-.24	-3.09**
	수입	50만 미만	-.01	-.00	-.04	.04	.03	.29	.01	.00	.06
		100만 미만	.04	.03	.32	.04	.03	.32	.06	.04	.54
		200만 미만	.07	.06	.61	.08	.06	.69	.09	.07	.85
	주택	아파트	-.12	-.07	-1.30	-.09	-.06	-.84	-.04	-.02	-.40
	개인 특성	차별	차별				.02	.03	.39	-.01	-.02
출생 시						-.27	-.21	-1.88	-.27	-.21	-2.11*
시기		10대 미만				-.01	-.01	-.06	-.00	-.00	-.01
		30대 이상				-.23	-.07	-.96	-.17	-.06	-.81
급수		1급				-.02	-.01	-.11	-.09	-.06	-.66
		2급				.04	.03	.31	-.01	-.00	-.06
안전 문화	안전의식								-.03	-.04	-.66
	안전정보								.23	.30	4.24***
	안전교육								.19	.25	3.72***
R ²			.07			.12			.31		
adjR ²			.03			.06			.26		
ΔR^2			.07			.00			.04		
F			1.96*			1.94*			5.62***		
ΔF			1.96*			.18			13.81***		
Dubin-watson						1.56					
VIF			102 - 1.94			1.05 - 3.16			1.05 - 3.16		

청각장애인의 변인 별로 살펴보면 인구통계특성에서 나이는 가정 안전과 전기 안전에 영향을 주고, 학력은 교통 안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했다. 이에 인구통계특성이 생활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에서 가정 안전과 전기 안전은 나이와 학력에서 유의미하고, 소방 안전, 재난 안전, 생활 안전은 학력에서 유의미 하였으나 교통 안전에서는 어느 영역도 유의미 하지 않았으므로 청각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이 생활 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개인특성은 장애 발생 시기에서 가정 안전, 전기 안전, 생활 안전에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에서는 차별 경험과 장애 급수에서는 유의미 하지 않았고, 시기에 있어서만 가정 전

기 생활안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청각장애인의 개인특성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장애발생 시기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안전문화에서 안전의식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안전정보는 소방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에서 영향을 주었으며, 안전교육은 재난안전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청각장애인의 안전문화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안전의식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안전정보는 소방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에서 유의미하고, 안전교육은 재난 안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표 4-31> 청각장애인의 생활안전과의 관계 요약

변수			가정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인구 통계 특성	나이	50대 미만	2.34*	2.34*				
	학 력	중등졸	-2.14*	-2.14*		-2.12*		-2.01*
		고등졸	-2.14*	-1.68*		-2.28*	-2.40*	-3.09**
개인 특성	시기	출생시	-2.84**	-2.84**				-2.11*
안전 문화	안전 정보					2.58*	4.85***	4.24***
	안전 교육		3.48**	3.48**	2.61*	2.32*		3.72***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위의 요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별 의식의 수준과 의식의 중요성을 볼 때 청각 장애인은 안전의 수준은 높다고 여겨지는데, 의식의 중요성은 가장 낮았다. 이는 청각 장애인은 안전의 수준이 높게 지각되므로 안전의 중요도가 크게 다가오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 경험으로 살펴보면 청각장애인들이 차별을 가장 많이 받고, 시각 장애인은 차별을 가장 적게 받는다고 지각했다. 또한, 안전의 위험을 느끼는 장소를 살펴봐도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위험을 받았다. 그 이유는 청각 장애인은 지체와 시각 장애인에 비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비 장애인들도 상대적으로 청각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적다고 생각해서 청각 장애인과 비 장애인들의 접촉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상으로 전국민적인 계몽 및 교육을 통해 인권차원에서의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사자인 장애인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의 안전사고의 원인에 있어서 장애인별로 볼때 시각 장애인은 법제도 미비와 관리감독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다면, 청각장애인은 안전의식의 부족과 홍보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다. 즉,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지각한 사고원인을 달리 지각하므

로 장애인별에 맞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통계특성이 생활안전과의 관계에서 지체장애인은 나이, 시각장애인은 나이, 학력, 수입, 주거지형태, 청각장애인은 나이, 학력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는 시각 장애인은 인구 통계 특성에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나이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연령별 혹은 장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령별 안전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특성과 생활안전과의 관계에서 지체장애인은 차별 경험, 장애발생시기와 장애급수에서 영향을 받고, 시각장애인은 차별경험과 급수에서 영향을 받으며, 청각장애인은 시기에 서만 영향을 받는다. 개인특성에 따른 생활안전에서 지체장애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와 생활안전과의 관계에서 지체장애인은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안전의식과 안전정보는 비슷하게 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시각장애인은 안전정보가 안전교육보다 생활안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체장애인과 다른 부분이다. 청각장애인은 안전정보가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점은 시각장애인과 비슷하였다. 반면에 안전의식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안전문화에 있어서 장애인별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 정보 및 안전의식의 증진할 방안을 정책적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이 연구의 장애인들의 안전의식, 안전교육 및 안전정보가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이다. 특히,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때 시각 장애인들에게 읽어주는 분이 필요했고,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가 필요했기에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연구는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고 결론과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15유형의 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의 인지 및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하지만 중간에서 말을 하거나 수화하는 과정에서 의미전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간 역할자의 주관적인 개입으로 인한 오차의 범위가 클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과 대상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지역은 대도시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대상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안전의식, 안전교육 및 안전정보와 생활안전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모든 장애인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의 연구는 양적으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양적연구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를 습득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정책에 반영될 연구가 있어야 한다.

셋째, 대상에 있어서 성인과 아동 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의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